# □ 남원용성중학교 학칙 개정 신·구 대조표:

# 혀 행

# 제1장 총 칙

## 제1조 (목적)

본교는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제2조 (명칭)

본교는 남원용성중학교라 칭한다.

#### 제3조 (위치)

본교는 전북 남원시 춘향로 73번지에 둔다.

# 제2장 수업연한·학년·학기 및 휴업일 제4조 (수업연한)

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 다만.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#### 제5조 (학년·학기)

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로 하고, 제2학기는 여름방학이끝나는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한다.

# 제6조 (휴업일 등)

-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  - 1. 관공서의 공휴일
  - 2. 하계휴가

# 개 정 안(2021.2.)

#### 제1장 총칙

#### 제1조(목적)

본교는 초·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중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명칭)

본교는 남원용성중학교라 칭한다.

# 제3조(위치)

본교는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73번지에 둔다.

# 제2장 수업연한·학년·학기 및 휴업일 제4조(수업연한)

-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
- ② 초·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 즉,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 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 여할 수 있다.

#### 제5조(학년, 학기)

학년 및 학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.

- 1. 학년은 3월 1일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2.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·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1학기 종료일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.

#### 제6조(휴업일)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 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
- 3. 동계휴가
- 4. 학년말 휴가
- 5. 개교기념일(3월23일)
- 6. 효도휴가
- 7.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
- 8. 학교장 재량휴업일
  -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휴 가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.
  -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 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 다
  -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 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 킬 수 있다

-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  - 1. 국경일, 공휴일
  - 2. 개교기념일 (3월 23일)
- 3. 하계휴가 :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 영계획에 의한다.
- 4. 동계휴가 :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 영계획에 의한다.
- 5. 학년말 휴가 : 당해 학년도 교육과 정운영계획에 의한다.
  - 6.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
- ② 제1항의 3, 4, 5호 휴가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③ 학교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 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 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

#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(학급편제)

본교의 학급편제는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장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수에 따른다. 제8조 (학생정원)

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 전라북도남 원교육지원청장이 매 학년도 배정하는 학급당 학생수로 한다.

#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(학급편제)

학급편제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매 학년 초 남원교육지원청에서 편성·배정한 학급수에 의한다.

제8조(학생정원) 본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관할교육 청으로부터 배정된 수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 을 관리할 수 있다.

- ①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.
-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.
- ③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

#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·수업일수·평가와

#### 제4장

# 수료 및 졸업

# 제9조 (교과 및 교육과정 등)

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·중등교 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.

#### 제10조 (수업일수)

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 로 한다. 다만 학교장은 초·중등 교육법 시 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전 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장의 승인을 얻어 10 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

#### 제11조 (교외체험학습)

-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의 출원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,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
- ② 교외체험학습은 교과내용별 체험 학습 장 발굴 활용, 체험학습 운영 방법 적 정. 도농간 교류학습. 가족 동반 체험 학습, 흙사랑 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나 누어 추진한다.
- ③ 교외체험학습의 활동 유형은 역사기 행, 자연관찰, 국토순례, 문화유적 탐 방. 산업시찰. 견학 등으로 한다.
- ④ 운영방안은 교과 내용별 현장체험 교 육장의 발굴과 활용, 현장체험에 관한 탐구 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다.
- ⑤ 교류학습의 경우에는 연 1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# 교육과정·수업일수·교외체험학습·고사 제9조(교육과정)

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 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. 교육 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용한다.(초·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3조)

# 제10조(수업일수)

-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 상으로 한다.
- ② 다만. 천재지변. 연구학교의 운영 또 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에 따른 자 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-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 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 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 정에 의한다.
- ④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/3이상을 출석 해야 한다.
- ⑤ 재입학·편입·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(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). 제11조(교외체험학습) ① 학교의 장은 교육 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사설학 원,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, 방 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의 교외체험학습 지침에서 허용하는 기간 ⑥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. 교외체험학습

- 는 연 1주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①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절차는 학부모가 허가원을 제출하고 이를 학교장이 심의 하여 허가한다.
- ⑧ 이 외 교외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이 따로 정한다.

# 제12조 (평가)

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 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고사를 실시한다.

- ① 1,2학기 1차고사
- ② 1.2학기 2차고사
-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고 사

## 제13조 (수료 및 졸업)

-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 정도 와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정한다.
-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- ③ 초·중등교육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 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 행할 수 있다

-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,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운영이 가능하다. (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)
- ③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,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, 성적확인 기간 은 피해서 실시한다.
- ④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.
- 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,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,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 경계' 단계인경우에 한하여 '가정학습'을 승인사유에포함한다.
- 1)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 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자 율설정
- 2 ) 위기경보 '관심,주의'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
- ⑥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)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를 제출한다.
- ⑦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.
- ⑧ 이 외 교외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고사) 고사는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한다.

제5장 입학·편입학·재취학·전학·유예·면제

제5장

입학·재취학·편입학·전입학·취학의무의

# 면제 및 유예·수료 및 졸업 제13조(입학자격)

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
- ② 초·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하여 초등 학교를 조기 졸업한 자
- 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 정된 자
- 1.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
- 2. 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 각 호(군사 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, 다문화학생, 외국 인인 아동 또는 학생,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, 교육 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 람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 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
- 3. 종전의 「소년원법」(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 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
- 4. 「대안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
- 5.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
- 6.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
- ④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 재된 적령아동과 학령아동을 본교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.

# 제14조 (입학시기)

-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  - ② 본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 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

# 제15조 (입학결정)

본교의 입학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 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장의 배정과 학교장의 입학 허가로써 결정된다.

#### 제16조 (재·편입학)

- ① 유예중인 자의 재입학 할 수 있는 학년 결정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다.
-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 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.

#### 제17조 (전학)

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·중등교 육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. ⑤ 학교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는, 초·중등교육법 제13조(취학 의무) 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조기입학 승인을 받아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 할 수 있다.

#### 제14조(입학 시기)

중학교 학생의 입학,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 단,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일정에 따라전 ·편입학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음(전라북도교육청 전·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).

#### 제15조(입학허가)

본교 입학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 조(중학교 입학방법) 제2항 및 제69조(체육 특기자 등의 입학방법)와 제75조(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·전학 및 편입학) 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 를 허가한다.

#### 제 16조 (재취학)

본교에서 의무취학을 면제 받거나 유예한 자로서 다시 취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재 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. 재취학의 절차와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전·편입학 및 재입 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.

#### 제17조(전 · 편입학)

본교에 전·편입학하려는 자는 전라북도교육청 전·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,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(중학교의 전학 등), 제74조(편입학) 및 제75조(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·전학 및 편입학)에 의거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.

#### 제18조(재외국인 자녀의 입학절차 등)

# 제18조 (휴학)

-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자가 질병 기타 부득 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의 연서로서 출원하여 학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 다.
-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## 제 19조 (유예)

- ① 본교의 재학 중인 자가 질병 기타 부 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하려는 자 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서 류를 갖추어 보호자의 연서로서 출원하 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 다.

# 제20조(의무교육면제·유예·정원 외 관리 중인 자의 취학)

- ① 의무교육을 면제·유예·정원 외 관리 중인 자(본인과 보호자를 포함하여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)로서 본교에 취학 (재취학을 포함한다)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 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조기진급 및

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 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(재 입학) 또는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.

# 제 19조 (전학)

- ①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·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, 전입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및 전산자료를 송부 요청하고, 전출의 경우는 이를송부하여야 한다.
-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(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)

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·중등교육법 제13조(취학 의무) 규정에 의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.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(※초·중등교육법 제14조,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)

①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(자퇴 포

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장 제30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실시한 취학 희망학년 의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취학할 학년을 결정하고 취학을 허가한다.

- ③ 위원회는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국 내·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 기간을 합산 하여 산출한 학년과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취학 학년을 고려하여 평가교 과목, 평가내용,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 을 정하며, 이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④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취학 희망학년을 선택하여 취학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때 국내·외정규학교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설명하고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학교측의 설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.
- ⑤ 국내·외 총 재학기간 합산 결과에 따라 해당학년 또는 그 이하 학년으로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로 취학가능성에 대한 평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.

## 제21조(귀국학생 등의 전·편입학)

①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정 규학교에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(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 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 는 자인 경우에 한함)이나 외국인학생, 탈북자(자녀포함)가 본교에 전·편입학

- 함)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 는 면제 처리한다.
- ② 면제 또는 유예는 불구나 폐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(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가능)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 예를 결정할 때, 아동의 질병이나 성장부진 등의 사유는 의사의 진단서를, 행방불명 등 의 사유는 읍·면·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 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.

## 제21조(의무교육관리위원회)

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시행 령 제25조 2에 의해 '남원용성중학교 의무 교육 관리위원회'라 정한다.(이하 '위원 회'라 한다.)

- ① 구성
  - 1. 본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임

- 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 외 2% 이내에서 허가한다.
- ② 제1항의 귀국학생 중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유학 등 불법 출국하여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, 비정규학교에서 취학한 후 귀국한 학생 등은 일반 전·편·재입학을 포함하여 학년별 정원 외 3% 이내에서 학교장이 전·편입학을 허가한다.

## 제22조(취학의무 면제)

- 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는 보호자의 신청 에 의하여 학교장이 사유 확인 후 결정 한다
- ②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.

- 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 외 2% 기는 1년(3월1일~다음 해 2월말)으로 한다.
  - 2. 구성원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내부위원 3명,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.
  - 3. 내부위원은 교감, 교무, 학적담당자 (간사) 3인으로 한다.
  - 4. 외부위원은 학교전담경찰관,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, 학부모위원 중 1인으로 한다.

#### ② 운영

'위원회'는 재적위원 1/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여,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결과를 결정한다.

# ③ 역할

- 1.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
- 2.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심의
- 3.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#### 제22조(유예자 등의 학적관리)

유예자등의 학적 관리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 행한다.

-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, 정 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 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정 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 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평가와 학교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.

# 제23조(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자의 학적 관리)

입학 이후 유예를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(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)로 학적을 관 리한다.

# 제24조(취학의 독촉, 경고 및 통보)

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을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다.
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연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
- 2.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

##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

# 제23조(수료 및 졸업)

-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.
-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- ③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 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 한다.
- ④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 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명예졸업장을 수 여할 수 있다.

#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4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)

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전라북도 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있다.

- 1.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, 사회(역사 포함), 수학, 과학,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[단, 자유학기 운영으로 학업성취도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어, 사회(역사 포함), 수학, 과학,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모두 우수한 자]
- 2.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 서 지능지수(IQ)가 140 이상인 자
- 3. 국가기관(중앙행정부처)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,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 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

# 제25조(목적)

이 영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(選定)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제26조(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)

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이하 "각급학교"라 한다)의 장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7조제1항에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- 1.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
- 2.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(修學)능력에 관한 사항
- 3. 국내외 경시·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

# 제25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)

-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(3월 말) 이내에 한다.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(4월말) 이내에 한다.
-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 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.
- ③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(이하 "조기진급·졸업대상자"라 한다)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.
- ④ 각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기 진급을 인정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 른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를 거쳐야 한다.
- ⑤ 조기진급·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.

## 제26조(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)

-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에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 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1. 제25조 제3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
- 2. 제25조 제5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 이 된다. 다만,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 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.
  -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대체

# 제27조(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)

- ①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(이하 "조기진급·졸 업대상자"라 한다)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.
  -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 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 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  - ③ 조기진급·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 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 다.
  -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 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.

# 제28조(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)

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·졸업대상자여부와 관계 없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

하다.

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 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 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 를 하여야 한다.

# 제27조(위원의 제적·기피·회피)

- ①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이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(除斥)된다.
- ②제23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# 제28조(졸업장)

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 다.

# 줄 수 있다.

-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  - 1.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
  - 2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6조제2 항·제78조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
  -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  -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제29조(조기진급・졸업・진학 평가위원회)

-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 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1.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 기이수 인정 평가
- 2.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
 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. 다만,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위원장이 된다.
  -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,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.
  -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

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있다.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.

# 제30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(除斥)된다.
-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 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 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 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7장 학생포상 및 징계,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

# 제31조 (학생 포상 등)

① 학생포상 및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(이하'<u>학교생활규정</u>'이라 한다)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 제7장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징수 제29조(수업료·입학금)

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·중등교육법 제12 조 제4항에 의거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 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
## 제30조(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 징수)

-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현장학습, 방과후학교 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, 이에 필요한 경비를

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.

## 제32조 (학생의 징계 등)

-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  - 1. 학교 내의 봉사
  - 2. 사회봉사
  - 3. 특별교육이수
- 4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
-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 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 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.
- ④ 학교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・운영하고,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・설비의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,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⑥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 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.

제8장 기 타

징수 할 수 있다.

-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성금, 위문금을 모금 할 수 있다.
- ④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학교 회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.

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

# 제33조 (학생자치활동)

- ① 본교는 학생자치활동으로 학생회를 둔다.
- ② 학생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.
- ③ 학생회의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생회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#### 제34조(의무교육)

본교의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·중등 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.

#### 제35조 (학교규칙개정절차)

- ① 학칙은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 한다.
- ② 다만,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,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 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 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④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승 인된 개정 학교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본교에 도착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⑤ (시행세칙)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 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.

# 제31조(포상)

- ①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 과별로 선행·효행·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 감이 된 자,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 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 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포상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본교 학업성 적관리규정에 의한다.

## 제32조(학생징계)

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.

- ①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,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② 훈육·훈계의 방안으로는 구두주의, 격리조치, 상담활동, 학습활동, 봉사활동,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있으며, 훈육·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·정신적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③ 지도교사(담임교사, 교감, 교장 등)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, 훈계, 상담과 지도에 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다.
- ④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#### 제33조(장애학생대상 학생징계)

- ① 특수학급·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(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)에 적용 된다
  - ②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(성폭력) 사 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.

③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,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.

# 제34조(장애학생의 보호)

-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.
-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 제35조(피해학생의 보호 기준)

- ① 심리상담 및 조언
- ② 일시보호
- ③ 치료를 위한 요양
- ④ 학급교체
- ⑤ 전학권고

#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6조(학생자치활동의 조직)

-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으로 학생회를 두며, 학생회의 조직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. 그 외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생활규정의 학생회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- ②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- 1. 민주적인 학생 자치회 활동(학급, 전교다모임)
- 2. 학예, 체육,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 한 활동
  - 3.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
- 4. 학교의 전통,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
  - 5. 각종 봉사활동

- 6. 청소년단체 참여 활동
- 7.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
-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학교표준교육비에서 지원한다.

## 제10장 장애인 차별 금지

#### 제37조(차별금지)

-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,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면,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· 실습, 현장견학,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을 이유로 장애인의 참 여를 제한. 배제,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, 정보제공 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 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, 특수교육 교원, 특수교육보조원,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38조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

-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 하여야 한다.
- 1.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
  - 2.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

- 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
- 3.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

# 제39조(개인정보보호)

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, 당해 개인정보 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·남용으로부터 안 전하여야 한다.

## 제40조(문화·예술활동의 차별금지)

① 장애인이 문화·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제41조(체육활동의 차별금지)

-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 제42조(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 별금지)

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11장 학칙개정절차

#### 제43조(학칙 개정절차)

- ① 학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.
- ② 다만,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,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44조(시행규칙)

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·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. 기타 지침.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#### 부 칙(1999.02.03)

① (시행일) 개정한 본 학교규칙은 199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2002.04.04)

① (시행일) 개정한 본 학교규칙은 200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04.06.21)

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4년 6월 21일부 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06.03.21.)

터 시행한다.

# 부 칙(2011.4.25.)

① (시행일) 개정한 본 학교규칙은 2011년 ① (시행일) 개정한 본 학교규칙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2012.3.2.)

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3.3.2.)

① (시행일) 개정한 본 학교규칙은 2013년 ① (시행일) 개정한 본 학교규칙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1999.02.03)

① (시행일) 개정한 본 학교규칙은 199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2002.04.04)

① (시행일) 개정한 본 학교규칙은 200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04.06.21)

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4년 6월 21일부 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06.03.21.)

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6년 3월 21일부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6년 3월 21일부 터 시행한다.

# 부 칙(2011.4.25.)

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2012.3.2.)

① (시행일) 개정한 본 학교규칙은 2012년 ① (시행일) 개정한 본 학교규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2013.3.2.)

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21. . .)

① (시행일) 개정한 본 학교규칙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